

파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59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1. 5. 2
제 출 자 : 파 주 시 장

☐ 제안이유

상위법인 주민등록법의 개정 내용중 주민등록증의 행정자치부 발급등으로 인하여 현재 우리시에서 제정 운영중인 파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를 개정법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☐ 주요골자

권한위임 제외사항 중 용지관리를 삭제함(안 제2조 1)

파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

파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“읍·면·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”를 “읍·면·동장 또는 출장소장(이하 “읍·면·동장”이라 한다)에게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법 제17조의8에 의한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·소		시민과 ☎ 940-4201
입안자	시민과장	정태열
	호적담당	권혁임
	담당자	유미경

신구조문 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2조제2항에 의거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·면·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2조제2항에 의거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·면·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-----	-----	-----
제2조(권한의위임)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·면·동장에게 위임한다. 다만, 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45조, 제45조의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·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은 시장 또는 읍면동장이 관장한다.	제2조(권한의위임)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·면·동장에게 위임한다. 다만, 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45조, 제45조의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·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은 시장 또는 읍면동장이 관장한다.	제2조(권한의위임)-----	-----	-----
1. 법 제17조의8 및 영 제36조제1항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	1. 법 제17조의8 및 영 제36조제1항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	1. 법 제17조의8에 의한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	-----	-----